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333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5.

발 의 자 : 김미애・유용원・송석준 성일종・김기현・배준영 이종배・강승규・조경태 김 건・강명구 의원 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가스는 난방,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.

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,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・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1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에 (20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20)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